

출산전후휴가급여



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·후로 90일(다태아 120일)의 휴가를 주되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,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.

지원대상

- ◆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 - *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지원내용

- ◆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23년 상한액 월 210만원)
 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: 90일분(다태아 120일) 지급
 - 대규모기업 근로자: 30일분(다태아 45일) 지급

'근로자 유산·사산휴가급여'도 있어요

- 임신근로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산·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, 휴가급여는 휴가 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(23년 상한액 월 210만원)

신청기간

- ◆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(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
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*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, 회 분할 사용 가능

지원대상

- ◆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
 - *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지원내용

- ◆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 (23년 상한액 401,910원)

신청기간

- ◆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


육아휴직급여



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- ◆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 - *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지원내용

- ◆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 지원
- ◆ 한부모 근로자는
 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50만원, 하한액 70만원)
 - 4~12개월: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 지원

'3+3 부모육아휴직제'도 있어요

-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합니다.
-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함
-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**공통으로 사용한 기간**을 기준으로 지급
- 부모 모두 '22.11. 이후 사용했거나, 둘 중 한 명이 '21년에 사용했다면,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'22.11. 이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함

예시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(통상임금의 100%)

- 모 1개월 + 부 1개월 : 각각 상한액 월 200만원
- 모 2개월 + 부 2개월 : 각각 상한액 월 250만원
- 모 3개월 + 부 3개월 : 각각 상한액 월 300만원

신청기간

- ◆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